

# Kant의 倫理說에 關하여

— 直覺論的 倫理說을 中心으로 —

李 熙 柱

## 目 次

|                      |             |
|----------------------|-------------|
| I 序 論                | 2. 實踐法則과 自由 |
| 1. 序 言               | III 批 判     |
| 2. Kant의 倫理說의 一般의 性格 | 1. 善 意 志    |
| 3. Kant의 倫理說의 基本의 前提 | 2. 實 踐 法 則  |
| II 本 論               | 3. 自 由      |
| 1. 善意志와 義務           | IV Summary  |

## I 序 論

### 1. 序 言

Kant의 倫理說은 人間은 理性的 存在라는 그의 道德觀과 人生觀의 토대위에서 設定되었다. 다시 말하면 傳統的인 合理主義의 道德觀의 意識이 그 根柢를 이루고 있다.

Kant는 道德의 絕對性을 疑心없는 事實로서 받아드리고 人間의 行爲의 是非善惡을 判定해주는 先天的인 絕對的 道德法則이 存在한다는 直覺的 假定위에서 그의 倫理說의 學的 體系를 구축했다.

그러므로 Kant가 그의 倫理學的 體系를 組織化 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여부는 絕對的 道德法則이 先天的 實在性을 밝히는 그의 立論의 成功與否에 달린 것이다.

Kant는 先天的 道德法則의 存在를 “純粹 理性的 事實”이라는 것을 經驗的 認識의 토대에서 論證하지 않고 直覺的 認識의 근거 위에서 立證하고 있다.

그 다음 Kant는 先天的 道德法則의 存在가 확실한 事實이라면 意志의 自由는 先天的 道德法則의 存在根據가 된다고 보았다.

Kant의 倫理學的 體系는 上述한 先天的 道德法則의 實在性과 意志의 自由라는 기초 위에서 論理的 組織이 展開된 것이다.

그러므로 本論考에서는 倫理學的 體系를 세움에 있어서 Kant가 試圖한 論理的 組織의 順序

를 따라 첫째 善意志와 義務, 둘째 實踐法則과 意志의 自由, 셋째로 “純粹實踐理性的 根本法則”의 概念分析으로부터 이끌어 낸 根本法則의 구체적 形式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 넷째로 典型의 概念을 대개로 해서 이끌어 낸 구체적인 實踐法則들의 樣式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課題들을 우선 解說的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Kant의 論理的 展開에서 發見되는 갖가지 理論의 難點들은 批判의 章에서 다루려고 한다.

## 2. Kant의 倫理學의 一般的 性格

倫理學的 原理 探究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 課題는 倫理判斷의 標準을 發見하는 것이다.

倫理的 價値判斷의 原理를 밝히는 方法論의 差異에 따라 古典倫理學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類型으로 大別해 볼 수 있다.

其一은 倫理的 判斷의 標準을 어떤 形而上學的 原理로부터 倫理的으로 推論해 내려고 하는 形而上學的 倫理說(Metaphysical ethics)이며, 其二는 經驗의 事實을 根據로 하여 道德의 原理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自然主義의 倫理說(Naturalistic ethics)이고, 其三은 道德의 價値判斷은 形而上學的 實在(reality) 또는 經驗의 事實(fact)에 토대를 두고 거기에서 間接的으로 推論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正常的인 사람이 라면 누구에게나 本有하고 있는 先天的 直覺力을 갖추고 있어서 行爲의 是非善惡을 直覺的으로 把握할 수 있다는 立場의 倫理說을 直覺論的 倫理說(intuitional ethics)이라고 한다.

倫理學에 있어서 이러한 類型의 分類은 G. E. Moore(1873~1959)에 의하여 처음 試圖되었으며, 一般的으로 定型화된 分類로서 普遍化 되고 있다.

Kant의 倫理說은 이러한 類型의 分類에 좇아서 어느 立場의 倫理說이라고 엄밀하게 規定하기에는 힘든 바 없지 않다.

Kant의 倫理學은 그의 哲學體系의 全體에서 본다면, Kant의 道德의 世界는 超感性的인 叡智界이며 純粹理論理性으로서는 認識할 수 없는 形而上學的 世界이다. 실제로 그의 倫理學의 基礎는 바로 그가 純粹理性批判에서 남겨두었던 先驗的 理念이라고 하는 超經驗的인 形而上學的 原理위에 세워졌다. Kant의 倫理學의 地盤은 理論理性的 權利가 미치는 自然因果의 感性界가 아니라 自由因果의 超感性的 叡智界이며, 그의 倫理學의 基本的 概念인 道德律, 및 自由가 理論理性的 認識限界를 넘어서 形而上學的 概念이라는 事實만 보더라도 Kant의 倫理學은 그의 哲學體系의 全體에 비취 볼 때는 形而上學的 倫理說이라고 規定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그의 倫理說을 體系에서 분리시켜서 倫理學 自体로서만 본다면 그의 倫理說의 要石이 되는 善意志(der gute Wille)가 直覺論的 概念이라는 點이다. 오직 善意志만이 無制約的으로 善

하며, 純粹實踐理性的 根本法則(Grundsatz d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이 純粹理性(der reinen Vernunft)의 唯一한 事實이라는 Kant의 立場은 理論的 論證을 통한 證明된 事實이라기 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實踐的 문제를 實踐理性的 立場에서 볼 때 要請(Postulat)된 直覺的 事實이라는 點이다. 그러므로 Kant의 基本的 立場인 無制約的 善意志나 '純粹理性的 事實'로서의 實踐理性的 根本法則은 認識論的 價値가 결여된 直覺的 道德意識이며 Kant의 基本的 信念에 불과한 것이다.

以上과 같은 論據에 비취 볼 때 Kant의 倫理說은 그의 倫理學的 獨自의 側面에서는 倫理學的 基本的 概念들이 直覺論的 前提 위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直覺論的 倫理說의 領域에 귀속시키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直覺論的 倫理說도 세가지 類型으로 分類된다.

첫째로, 모든 個別的 行爲의 道德的 價値를 直接的으로 知覺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비교적 素朴한 立場을 知覺的 直覺論(Perceptual intuitionism)<sup>1)</sup>이라고 한다.

둘째로 우리의 道德的 直覺은 基本的인 몇가지 原理 뿐이요, 具體的 行爲의 評價는 이러한 基本的 原理로부터 連역적으로 推論할 수 밖에 없다는 立場을 多元論的 直覺論(Pluralistic intuitionism)<sup>2)</sup>이라고 부르며,

셋째로는 倫理的 評價의 最高原理만이 直覺적으로 把握할 수 있다는 立場을 哲學的 直覺論(Pbilosophical intuitionism)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直覺論의 類型에 따르면 Kant의 倫理說은 道德의 最高原理만이 直覺적으로 파악된다고 하는 哲學的 直覺論의 一般的 前提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Kant는 純粹實踐理性的 根本法則이 純粹理性的 事實(Faktum der reinen Vernunft)이라는 주장은 直覺적으로 파악된 倫理的 意識의 事實이라고 볼 수 있으며 知的으로 認識된 認識論的 事實로서는 認定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하튼 Kant는 直覺論的 倫理說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Kant의 聲明에 依해서도 뚜렷이 確證될 수 있다고 본다.

Kant는 그의 倫理說의 基本的 要石이라고 할 수 있는 善意志에 關해서 善意志만이 本來的 善의 가치를 認定하고 또한 善意志는 이미 自然的인 全전한 悟性에 內在해 있으므로 가르쳐질 것이 아니라 啓發되기만을 要한다고 했다.

“Um aber den Begriff eines an sich selbst hochzuschätzenden und ohne weitere

1) Third Earl of Shaftesbury (1671~1713)에 依하면 人間은 道德이란 先天的 기능을 갖고 있어서 個個의 行爲의 善惡을 直接 把握할 수 있다고 한다.

2) R. Cudworth (1617~1688), R. Price (1723~1791)의 代表的 人物이다. Cudworth는 도덕의 原理를 數學의 公理와 같은 것으로 보았고, 主要德目만이 悟性에 依하여 直覺적으로 認知할 수 있다고 보았다

absicht guten Willens so wie er schon dem natürlichen gesunden Verstande beiwohnt und nicht sowohl gelehrt als vielmehr nur aufgeklärt zu werden bedarf, ...”<sup>3)</sup>

또한 實踐理性批判에서도 準則이 根本法則에 적합하며 또한 부적합한지는 悟性이 直接 把握할 수 있다고 한 事實만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Kant의 倫理說은 그 基本的 前提가 形而上學的 要素를 많이 內包하고 있지만 그의 倫理說을 直覺論的 倫理說로 規定해도 무방할 것이다.

### 3. Kant의 倫理說의 基本的 前提

Kant는 ‘純粹理性批判’에서 理論理性的 機能과 限界를 究明하였다.

그에 依하면 理知나 科學의 發言權은 기껏해서 自然界나 物質界의 범위내에만 통용될 뿐이며 人間의 가슴 깊이 파묻혀 있는 良心의 世界인 道德이나 信仰의 領域에는 아무런 發言權이 없다는 것을 解明하고 그것은 理智나 悟性이 아닌 별개의 道德的 理性에 依하여 처리하려 하였다. ‘實踐理性批判’은 바로 이러한 動機에서 道德과 宗教의 世界를 究明하려는 것이다.

Kant는 第一批判에서 神, 靈魂不滅, 自由의 문제는 理論理性的 認識領域을 넘어선 것으로서, 그러한 課題를 다루는 종래의 形而上學的 探究는 理性的 越權의 行事임을 강조했지만, 그는 人間이 實踐의 立場에 섰을 때 道德과 信仰의 意識이 強迫관념으로 엄습해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사실은 Kant의 實踐理性批判의 結尾에서

“내가 두 가지 사물을 여러 차례로 또 長時間 省察하기에 종사하면 할수록 그 두 가지 事物은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畏敬을 내마음중에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事物이란 네 머리위의 별이 총총한 하늘과 내마음 안에 있는 德律이다.”

“Two things fill the mind with ever new and in creasing admiration and awe, the oftener and more steadily we reflect on them:the starry heavens above and the moral law within.”<sup>4)</sup>

라고 한 表現을 보더라도 分明한 것이며, 또한 Kant의 道德的 精神을 잘 밝혀주고 있다고 하겠다.

人間은 道德的 關心과 道德的 가치를 가진 動物이다. 人間은 생각할 뿐 아니라 行動한다. 진

3) Kant :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Reclam-Verlag Stuttgart, S. 35, 1952 .

4) Kant :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p. 360, Encyclopedia Britannica, Inc., Geat Book, Vol., 42,

실로 人間은 본래 행동하는 存在이다.

Kant는 神, 영혼, 자유, 世界의 限界는 認識의 對象은 아니지만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가’(Was Ich tun soll)라는 것을 實踐的 立場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道德的 意識이 있다는 사실은, 意識에 나타난 事實으로써 否認할 수 없다는 것이다.

Kant의 認識論은 既成科學의 論理的 可能根據를 밝히려는 의도에서 출발된 것이지만 그의 倫理學의 出發은 既成倫理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理性 가운데 깃들인 道德法則의 意識에서 출발된 것이다.

Kant는 道德法則을 理性的 直覺的 事實임을 強調하고, ‘道德法則’의 存在는 人間理性이 아무리 否認하려고 해도 도무지 否認할 수 없는 明確한 事實이라고 보았다. 그렇다고 目前의 책상을 보는 것처럼 感覺的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經驗的 事實’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른바 ‘理性的 事實’임을 강조한 것이다.

道德法則이 ‘理性的 事實’이라는 直覺論的 前提가 Kant의 倫리학이 가장 第一義的 前提이요 公理가 되는 것이다.

道德法則이 理性的 直覺的 事實이라는 前提로부터 自由의 存在를 要請(Portulat)에 依하여 이끌어 냈고, 이러한 道德法則과 自由의 實在라는 前提위에서 Kant의 倫理說이 理論的 전개가 試圖되고 있다.

## II 本 論

### 1. 善意志와 義務

倫理學의 基本的 課題는 行爲의 是非善惡을 判別해주는 倫理學的 評價의 基本的 標準을 밝히는 일이다.

대부분의 古典倫理學者들은 倫리학의 根源의 原理를 發見함에 있어서, 樂觀적 人生觀을 토대로 삼고, 우리 人間에게는 누구나가 진력해서 成就해야 할 普遍的 目的 내지 行爲의 옳고 그름을 判別해 줄 先天的 法則이 存在한다는 基本的 信條 밑에서 출발했다.

Kant의 倫理說도 그러한 古典的인 樂觀的 人生觀이 그 基抵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古典倫理學은 대체로 ‘人間은 理性的 動物’이라는 人間學的 解釋을 發판으로 삼고 人間의 本質은 感性이 아니라 理性이라는 前提가 基本的 假說이 되고 있다.

Platon 이래로 合理主義的 傳統의 倫理說은 그러한 基本的 假定 위에서 理性的 行爲만이 옳고, 道德的 가치를 認定할 수 있다는 생각이 普遍化 되었다고 할 수 있다.

人間은 感性의 支配를 떠나서 理性的 법칙에 따라야 하며, 意志가 感性의 支配에 屈服되지

않고 理性的 命令에 따르는 것을 自由라고 했다. 그러한 '自由人'의 實現이 合理主義의 倫理說의 理想的 目標이었으며, 感性보다 理性的 優位性이라는 基本的 信條가 合理主義의 絕對論의 出發點이라 할 수 있겠다.

Kant의 倫理說도 그러한 合理主義의 傳統 위에서 理性的 行爲만이 倫理的 가치를 認定할 수 있다는 基本的 信念으로부터 出發하고 있다.

Kant는 人間을 感性的 機能과 理性的 機能의 두가지 종류로 大別하고, 感性이 屬하는 자연계와 理性이 屬하는 叡智界로 이 世界를 兩分化하고 있다.

그는 感性的 世界는 自然因果의 必然의 法則의 支配下에 있으며 叡智界는 理性的 法則이 지배하는 自由의 世界이다.

人間은 다른 自然物과 더불어 自然의 一部分인 만치 自然의 必然의 法則의 支配에 例外일 수 없다. 人間은 生理的 또는 心理的 因果의 支配下에 있는 自然物의 一種이다. 人間은 感性的 動物인 한, 必然의 예속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Kant는 人間의 本質은 理性, 이라는 傳統的 信念을 토대로 삼고, 理性은 感性的 법칙의 支配下에 있는 自然의 一部가 아니라, 感性的 支配를 벗어난 것으로서, 理性은 獨自의인 理性自體의 법칙에 依하여 움직이는 다른 世界에 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Kant에 依하면, 感性에 예속하되 因果의 世界는 自然界이며, 理性의 世界는 因果의 法칙을 越超한 叡智界이라고 보았다.

Kant에 있어서는 自然은 곧 必然과 一致하는 概念이며 感性的인 것을 뜻하는 것이요, 自由는 理性的 法칙을 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理性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Kant가 말하는 自然界는 곧 必然의 世界이요, 叡智界는 곧 自由의 世界인 것이다.

人間은 感性和 理性이 結合된 具體의 全体인 만큼 자연법칙에 예속되는 동시에 또한 叡智界의 法칙도 받아야 하는 두 君主의 支配下에 있다고 봄이 合論理的 歸結일 것이다.

그러나, Kant는 '人間은 理性的 存在'라는 古典의 人間觀에 根據하여 人間의 참다운 本質은 理性이라고 보고, 理性的 存在者인 人間은 理性的 法則에 따르는 것이 그 義務라는 直覺的 假定 위에서 그의 倫理說이 出發된다고 할 수 있겠다.

Kant는 인간은 感性和 理性의 두 君主의 支配下에 있는 만큼, 우리의 意志는 感性的 要素로 因하여 自然의 法則을 따르는 傾向(Neigung)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傾向性을 배제하고 理性的 法칙에 따라야 한다는 信念 위에서 出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Kant는 自然 即 感性에 따르는 것은 傾向性(Neigung)이요, 必然이며 理性을 따르는 것은 義務(Pflicht)이며, 自由라는 觀念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義務(Pflicht)를 따르려는 意志, 則 理性法則에 따르려는 意志를 善意志라고 했으며, 이러한 善意志(der gute wille)에 價値의 根源을 두었던 것이다.

Kant는 善意志만이 無制的 善이며, 本來的 價値를 所有한 것으로서, 行爲의 是非善惡을 판단하는 道德的 價値의 不可缺한 前提條件이다. 그러한 事實은 Kant의 다음과 같은 表現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Es ist überall nichts in der Welt, ja überhaupt auch außer derselben zu denken möglich, was ohne Einschränkung für gut könnte gehalten werden, als allein ein guter Wille.”<sup>5)</sup>

善意志는 Kant의 倫理說이 出發點이며, 基本的 前提인 단치, 善意志의 意味解明으로부터 그 의 윤리설을 考察하는 것이 당연한 順序라고 생각된다.

善意志란 理性의 가르침을 따라 옳은 行동을, 그 結果야 어떠한지 간에 단지 그것이 옳다는 理由만으로 선택하는 意志이다. 다시 말하면 結果에 대한 고려나 자연적 傾向과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實踐의 法則(道德律)을 純粹한 動機에서 준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絕對的 義務라는 意識에서 行하는 意志를 말한다. 善意志는 慾望이나 性向의 명령을 따르는 意志가 아니고 純粹한 理性의 命令을 따르는 意志를 말한다.

그러므로 善意志를 ‘自由意志’ 또는 純粹意志라고도 하며, 자연적 傾向性을 좇는 ‘經驗的 意志’와 구별된다.

사람들이 普通 善하다고 칭찬하는, 건강, 용기, 지혜, 富, 같은 것도, 그 自体로서 善한, 無條件的 善이 아니라, 善意志와의 關聯性에 依하여 그 道德的 價値가 부과되며, 善意志만이 無制約的 善으로서 모든 道德的 評價의 絕對的 制約條件이 된다.

Kant의 그러한 主張은 다음과 言明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diesen Begriff, der in der Schätzung des ganzen Werts unsrer Handlungen immer obenan steht und die Bedingung alles übrigen ausmacht, zu entwickeln.”<sup>6)</sup>

Kant의 善意志의 概念은 義務의 概念과 密接分可分의 關係를 가진다.

善意志는 ‘實踐의 法則’ 즉 理性의 法則에 따르려는 意志이며, 또한 義務는 ‘實踐의 法則’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意識이 곧 義務이기 때문이다.

人間은 自然的 因果의 世界에 屬하고 있으므로, 人間의 意志는 自然的 傾向性의 支配下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道德的 行爲를 위해서는 ‘實踐의 法則’ 즉 ‘理性의 法則’은 人間의 意志에 對하여 命法的 형태를 띄지 않을 수 없으며, ‘마땅히 해야한다’는 當爲(sollen)의 형태로서 나타

5) Kant :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S. 30

6) Ibid., S. 35

난다. 그러므로 善意志는 義務의 意識을 수반하는 意志이며, '實踐法則'에 對하여 無條件 '따라야 한다'는 '義務'의 意志를 말한다, 그런고로 善意志란 義務의 意志에서 義務를 行하는 意志를 의미한다. 즉 '義務 그 自体'를 위하여 義務를 이행하는 意志를 뜻한다.

또한 義務의 概念은 善意志를 前提한다. 善意志는 自由意志로서 實踐法則을 따르는 意志이다. 즉 義務를 行하려는 意志이다. 그러므로 義務를 이행하려면 그 義務를 따를 수 있는 自由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해야한다'(sollen)는 義務는 '할 수 있다'(können)는 自由를 必然的으로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Kant는 義務는 善意志 (自由意志)를 그 안에 포함한다라고 말했다.

Kant의 善意志와 義務의 關係에 關한 表現을 直接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Wollen wir den Begriff der Pflicht vor uns nehmen, der den eines guten Willens, obzwar unter gewissen subjektiven Einschränkungen und Hindernissen, enthält, die aber doch, weit gefehlt, daß sie ihn verstecken und unkenntlich machen sollten, ihn vielmehr durch absteckung heben und desto heller hervorscheinen lassen.”<sup>7)</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善意志'란 '義務 그 自体'를 尊敬하는 마음에서 義務를 수행코자 하는 意志라고 말할 수 있다. Kant에 依하면 行爲의 結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善意志의 動機는 客觀的으로는 '實踐法則'의 表象이라고 할 수 있으며, 主觀的으로는 '實踐法則'에 對한 尊敬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結果에 對한 고려나 自然的 傾向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實踐法則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義務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義務意識에서 行하는 意志만이 善한 것이며, 倫理的 價値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Kant에 依하면 義務에 反하는 行爲, 즉 傾向에서 결정된 行爲는 反道德的 行爲이며 비록 義務에 맞는 (pflichtmäßig) 行爲라 할지라도 그것이 義務에 대한 尊敬에서 행한 行爲가 아닌 限, 適法性(Legalität)을 가질 뿐이요, 道德性(Moralität)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Kant의 例를 든다면, 우리의 生命을 保全함은 우리의 義務이지만, 단지 生命에 대한 애착심에서 그것을 보존한다든지 또한 他人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함은 우리의 義務이지만은, 단순히 동정심에서 친절을 베풀다면, 그러한 행동은 義務에 적합하기는 하나 義務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適法的 行爲에 불과하며 倫理的 價値를 認定할 수 없다는 것이다. 自然的 傾向性的 만족은 自愛이지 결코 義務가 아니기 때문이다.

適法的 行爲는 表面上으로 區別할 수는 없지만 意志의 內面的 動機로 보아서는 전혀 다르

7) Ibid., S. 35



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不幸과 절망적 傷心이 生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빼앗아 갔지만 義務意識에서 生命을 保存해 간다면 그것은 道德的 價値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남에게 慈善을 베풀능력도, 意慾도 전혀 상실한 사람이 오직 義務感에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다면 그때야말로 그 行動은 비로소 진정한 道德的 價値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Kant의 例를 직접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Dagegen sein Leben zu erhalten, ist Pflicht, und überdem hat jedermann dazu noch eine unmittelbare Neigung. Aber um deswillen hat die oft ängstliche Sorgfalt, die der größte Teil der Menschen dafür trägt, doch keinen innern Wert und die Maxime derselben keinen moralischen Gehalt. Sie bewahren ihr Leben zwar pflichtmäßig, aber nicht aus Pflicht.

Dagegen wenn Widerwärtigkeiten und hoffnungsloser Gram dem Geschmack am Leben gänzlich weggenommen haben; wenn der Unglückliche, stark an Seele, über sein Schicksal mehr entrüstet als kleinmütig oder niedergeschlagen, den Tod wünscht und sein Leben doch erhält, ohne es zu lieben, nicht aus Neigung oder Furcht, sondern aus Pflicht: alsdann hat seine Maxime einen moralischen Gehalt.

Wohltätig sein, wo man kann, ist Pflicht, und überdem gibt es manche so teilnehmend gestimmte Seelen, daß sie auch ohne einen andern Bewegunggrund der Eitelkeit oder des Eigennutzes ein inneres Vergnügen daran finden, Freude um sich zu verbreiten, und die sich an der zufriedenheit anderer, sofern sie ihr Werk ist, ergötzen können. Aber ich behaupte, daß in solchem Falle dergleichen Handlung, so pflichtmäßig, so liebenswürdig sie auch ist, dennoch keinen wahren sittlichen Wert habe, sondern mit andern Neigungen zu gleichen Paaren gehe, z. E. der Neigung nach Ehre, die, wenn sie glücklicherweise auf das trifft, was in der Tat gemeinnützig und pflichtmäßig, mithin ehrenwert ist, Lob und Aufmunterung, aber nicht Hochhätzung verdient; denn der Maxime fehlt der sittliche Gehalt, nämlich solche Handlungen nicht aus Neigung, sondern aus Pflicht zu tun.

Gesetzt also, das Gemüt jenes Menschenfreundes wäre vom eigenen Gram umwölkt, der alle Teilnehmung an anderer Schicksal auslöscht, er hätte immer noch vermögen, andern Notleidenden wohlzutun, aber fremde Not rührte ihn nicht, weil er mit seiner eigenen genug beschäftigt ist, und nun, da keine Neigung ihn mehr dazu anreizt, risse er sich doch aus dieser tödlichen Unempfindlichkeit heraus und täte die Handlung ohne alle Neigung, lediglich aus Pflicht, alsdann hat sie allererst ihren echten moralischen Wert.”<sup>8)</sup>

8) a. a. O., S. 36~38

Kant는 行爲의 道德的 價値를, 義務에 對한 '畏敬의 念'으로부터 義務 그 自体가 行爲의 動機가 되는 行爲만이 道德的 行爲라고 보는 것이다. 道德的 行爲는 意志가 理性의 形式的 原理에 支配를 받고 行動을 했을 경우만을 意味하며, 意志가 어떠한 目的이나 結果를 고려하는 動機에서 行해진 行爲는 비록 義務에 부합되는 行爲일지라도 道德性을 인정할 수 없다.

行爲의 道德的 價値는 自然的 傾向性에 對한 自愛의 感情에서가 아니라, 意志의 '自己原因性'인 "法則"에 對한 尊敬의 念에서만 內面的 價値를 인정할 수 있다. Kant에 의하면 "義務란 法則에 對한 尊敬으로 말미암아 行爲하지 않을 수 없는 必然性이다."

(Pflicht ist die Notwendigkeit einer Handlung aus Achtung fürs Gesetz)

그러므로 義務로부터의 行爲는 곧 法則에 對한 尊敬으로부터의 行爲를 말한다.

그러므로 Kant는 義務에 의하여 나온 行爲는 傾向을 제거해야 하며, 또 傾向과 아울러 意志의 各 對象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意志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意志에 남아 있는 것은 客觀的으로는 法則만이 있고, 主觀的으로는 이 實踐法則에 對한 순수한 尊敬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行爲의 結果로서의 對象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는 傾向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行爲의 結果가, 한 意志의 結果에 불과하고 意志의 활동 自体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傾向이 내 것이든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이든 간에 傾向一般에 대해서 尊敬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 그 傾向이 내 것이든 경우에는 그것을 是認할 수 있고 그 傾向이 他人의 것일 境遇라 하더라도 내 自身の 이익에 유리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때때로 그것을 나는 愛好할 수 있으나 尊重할 수는 없고 단지 法則自体만이 尊敬의 對象이 될 수 있다.

위에서 言及된 바는 다음과 같은 Kant의 言明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Ebenso kann ich für Neigung überhaupt, sie mag nun meine oder eines andern Seine sein, nicht Achtung haben, ich kann sie höchstens im ersten Falle billigen, im zweiten bisweilen selbst lieben, d. i. sie als meinem eigenen Vorteile günstig ansehen. Nur das, was bloß als Grund, niemals aber als Wirkung mit meinem Willen verknüpft ist, was nicht meiner Neigung dient, sondern sie überwiegt, wenigstens diese von deren Überschlage bei der Wahl ganz ausschließt, mithin das bloße Gesetz für sich, kann ein Gegenstand der Achtung und hiemit ein Gebot sein. Nun soll eine Handlung aus Pflicht den Einfluß der Neigung und mit ihr jeden

9) 意志는 實踐理性이므로 理性이 意志를 規定하는 것은 自己가 自己를 規定하는 것이므로 他的 原理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自己的 原理"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a. a. O., 40

Gegenstand des Willens ganz absondern, also bleibt nichts für den Willen übrig, was ihn bestimmen könne, als objektiv das Gesetz und subjektiv reine Achtung für dieses praktische Gesetz, mithin die Maxime, einem solche Gesetze selbst mit Abbruch aller meiner Neigungen Folge zu leisten."<sup>11)</sup>

Kant는 義務에서 나오는 行爲는 그의 道德的 價値를 意圖나 目的에서가 아니라 意志의 形式的 原理에 依해서 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Kant가 다음에 해야 할 과제는 意志를 制約하는 意志의 形式的 理로서의 實踐法則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이다.

## 2. 實踐法則과 自由

倫理說에 있어서, 古典的 絕對論은 대부분 人生의 普遍的 目的 내지 法則의 存在한다는 信條로부터 출발했고, 그러한 假定은 意志의 自由를 必然的으로 前提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古典 倫理學의 根源의 難點은 目的 또는 法則의 實在가 과연 의심의 여지가 없는 自명한 事實인가 하는 점을 명확한 논리적 토대위에서 밝혀주지 못했다는 것과 또한 目的 내지 法則이 存在한다고 前提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認識할 수 있느냐 하는 認識論的 難點을 해결함이 없이 信念으로서 前提해 버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Kant는 實踐的 法則의 存在의 根據나 意志의 自由의 問題를 無反省的으로 前提하지 않고 論理的 分析을 통해서 組織的으로 證明하려고 애쓰고 있다. —Kant의 그러한 노력이 과연 성공했느냐 하는 점은 批判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Kant는 實踐法則에 대한 尊敬의 動機에서 행한 義務로부터의 行爲만이, 즉 善意志로부터의 행위만이 經驗的인 制約을 받지 않는 無制約的인 善이라는 基本的 前提가 그의 倫理說의 出發點이다.

그러므로 Kant가 해야 할 第一義的 課題는 實踐法則 즉 道德律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이다.

그러나 Kant는 實踐法則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기 前에 純粹實踐理性的 絕對的 法則이 과연 存在하느냐 하는 實踐法則의 存在의 근거를 밝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實踐法則의 存在를 해명하는 것은 곧 實踐法則의 發見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Kant는 實踐法則은 意志의 自由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實踐法則의 存在근거를 '意志의 自由'라는 문제와의 상관관계에서 다루었다.

實踐法則의 存在가 事實로서 밝혀진다면, 意志의 自由는 必然的으로 要請(Postulat)되기 때

11) a. a. O., 40~41

문에, 自由의 存在는 간접적으로나마 확실시 되며, 반대로 自由意志의 存在가 밝혀진다면 경험적 必然性的 制約을 超越한 純粹意志 즉 先天的 意志가 自己의 法則 즉 理性的 法則을 所有하고 있음을 意味하므로 '意志의 自由'라는 概念의 分析에 依하여 普遍的 實踐法則의 存在는 그대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Kant에 依하면 實踐法則과 自由意志는 相互 密接不可分の 關係의 概念이다. 그는 道德律은 意志의 自由의 認識根據(ratio cognoscendi)이요, 意志의 自由는 道德律의 存在根據(ratio essendi)라고 했다.

'해야한다'(Sollen)와 '할 수 있다'(Können)는 相關의인 것으로, 法則은 自由를 인식하고 自由는 法則을 前提한다고 보았다. 이와같은 法則과 自由와의 不可分の 關係를 Kant의 다음과 같은 說明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if his sovereign ordered him, on pain of the same immediate execution, to bear false witness against an honourable man, whom the prince might wish to destroy under a plausible pretext, would he consider it possible in that case to overcome his love of life, however great it maybe. He would perhaps not venture to affirm whether he would do so or not, but he must unhesitatingly admit that it is possible to do so. He judges, therefore, that he can do a certain thing because he is conscious that he ought, and he recognizes that he is free—a fact which but for the moral law he would never have known."<sup>12)</sup>

그렇다면 Kant는 法則과 自由라는 두 가지 相互의 概念에서, 어느 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Kant는 實踐法則의 存在認識에서 출발한다. '條件 없이 實踐的인 것'의 認識은 自由로부터는 出發(anheben)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自由를 直接으로는 認識할 수 없기 때문이요 둘째로는 經驗은 自由로 하여금 自由와는 경반대인 기계적인 現象의 法則을 인식하게 하므로, 경험으로부터는 自由를 推理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Kant는 實踐法則의 存在를 밝히는데서부터 出發하고 있다.

그렇다면 Kant는 法則의 存在에 대한 認識의 根據를 어디서 구하고 있는가?

Kant는 바로 '實踐法則의 意識'의 事實性에서, 實踐法則의 存在의 根據를 確認하고 있다.

'實踐法則의 意識'이 우리의 意識위에 나타나는 부인할 수 없는 '意識의 事實'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實踐法則의 存在는 저절로 인정된다.

그러면 Kant는 어찌서 '實踐法則의 意識'이 意識의 事實이라고 긍정하고 있는가?

12) Kant: The Critique of pure reason, p. 302

Kant에 依하면 우리가 純粹한 實踐法則들을 意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純粹한 理論的 원칙들을 意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즉 理性이 우리에게 實踐法則을 필연적으로 明示한다는 사실과, 理性이 우리에게 모든 경험적인 조건의 制約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사실에 주목함에 의해서 실천법칙들을 意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와같은 見解를 Kant의 表現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ut how is the consciousness of that moral law possible? We can become conscious of pure practical laws just as we are conscious of pure theoretical principles, by attending to the necessity with which reason prescribes them and to the elimination of empirical conditions, which it directs.”<sup>13)</sup>

Kant는 實踐法則의 存在를 ‘純粹理性的 事實’(Faktum der reinen Vernunft)이라고 봄으로써 實踐法則의 存在는 인정된 셈이다.

과연 Kant가 주장하듯이 實踐法則의 意識이 정말 ‘純粹理性的 事實’인가의 여부는 批判의 예지가 많은 것이며, 純粹實踐法則의 意識은 ‘經驗的 意識’이 아니라 純粹理性的 意識인 까닭에 原理上 經驗的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며, 理性의 直覺的 認識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直覺論者로서의 Kant의 一面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Kant는 또한 純粹實踐法則의 意識은 經驗的 事實이 아니라, 純粹理性만이 갖는 絕對的 良心의 事實이라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그 根本法則을 理性에 앞서 있는 資料(Datum)들에서, 가령[마음대로 가정된] 自由의 意識에서 (이 意識은 본래는 우리에게 아예 주어지지 않으니) 假變적으로 이끌어 낼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그 根本法則은 어떠한 直觀—純粹한 直觀이든 經驗的 直觀이든—에도 기본을 두지 않는 [先天的 綜合命題]로서 自体上 우리에게 닥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because we cannot reason it out from antecedent data of reason, e. g., the consciousness of freedom (for this is not antecedently given), but it forces itself on us as a synthetic a priori proposition, which is not based on any intuition, either pure or empirical.”<sup>14)</sup>

그러한 事實은 사람들이 그를 行爲의 合法則性(Gesetzmäßigkeit)에 關해서 내리는 판단을 分析해 보면은 뚜렷해진다 하는 것이다. Kant는 비록 어떠한 자연적 傾向性이 行爲의 合法則性을 방해하더라도 行爲에 있어서의 意志의 準則을 항상 純粹한 意志에 순종시키고 있는 것을, 사람은

13) Ibid., p. 302

14) Ibid., p. 303

항상 發見할 것이라는 것이다.

以上の 論據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ant는 純粹實踐法則의 存在의 根據를 純粹實踐法則의 意識이 '純粹理性이 事實'이라는 前提에서 立證했다.

그 다음에 Kant가 밝힐 課題는 '意志의 自由'를 確認하는 일이다.

意志의 自由는 純粹한 實踐法則의 存在가 確認된 이상 그것을 밝히는 것은 Kant 에게는 별로 問題가 되지 않는다.

理性的 存在者인 人間에게 '純粹實踐理性的 法則'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엄연한 事實이라면, 理性의 人間은 모든 經驗的 制約을 벗어나서 純粹實踐法則에 따를 수 있는 無制約的 意志가 주어져야 한다는 事實은 必然的 要請(Postulat)이기 때문이다. 純粹實踐法則의 存在는 곧 意志의 自由를 前提한다. '純粹理性的 實踐法則'이라는 概念은 곧 理性이 經驗的 制約을 초월해서 따르는 '理性의 自己原因性的 法則'이라는 것을 意味하기 때문에 純粹理性이 實踐的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前提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純粹實踐理性的 存在가 이미 前提된 셈이다.

그러므로 自由意志는 無制約的인 純粹實踐理性이므로 意志의 自由는 '純粹實踐理性的 法則'이라는 概念의 分析에서 저절로 論證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Kant는 法則의 意識과 自由의 意識은 거의 不可分의 意識이며, 同一한 意識이라고 보아도 좋다는 見解를 피력하고 있다. 意志의 自由는 經驗的으로 認識 할 수 있는 認識論的 認識은 아니지만, 實踐理性的 必然的 要請에 依한 實踐的 認識이라는 것이다.

Kant에 依하면 '純粹實踐法則'은 自由의 認識制約이요, 自由는 '純粹實踐法則'의 存在制約인 것이다.

Kant는 '法則의 存在'가 '自由의 認識根據'라는 見解를 아래와 같은 言明에서도 잘 表現해 주고 있다.

"The concept of a pure will arises out of the pure practical laws, as that of a pure understanding arises out of pure theoretical principles.

That this is the true subordination of our concepts, and that it is morality that first discovers to us the notion of freedom, hence that it is practical reason which, with this concept, first proposes to speculative reason the most insoluble problem, thereby placing it in the greatest perplexity, is evident from the following consideration. Since nothing in phenomena can be explained by the concept of freedom, but the mechanism of nature must constitute the only clue; moreover, when pure reason tries to ascend in the series of causes to the unconditioned, it falls into an antinomy which is entangled in incomprehensibilities on the one side as much as the other; whilst the latter (namely, mechanism) is at least useful in the explanation of phenomena, therefore no one would ever have been so rash as to introduce freedom into

science, had not the moral law, and with it practical reason, come in and forced this notion upon us.”<sup>15)</sup>

위에서 論述한 바에 의하여 Kant는 純粹實踐法則의 存在와 自由가 實踐的 認識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다음에 Kant가 밝혀야 할 과제는 순수한 實踐法則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는 일이다.

Kant는 純粹實踐法則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는 純粹實踐法則이라는 概念의 分析에서 출발한다. 純粹實踐法則이란 곧 ‘無制約的 實踐法則’(unbedingtes praktische Gesetz)을 뜻한다. 無制約的 實踐法則은 經驗的 制約을 받지 않는 純粹實踐理性的 法則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純粹實踐法則’이라는 概念은 主觀的이고 相對的인 ‘經驗的 實踐法則’이 아니라, 普遍的이고 絕對的 法則이라는 뜻이다. ‘純粹實踐法則의 概念’ 속에는 이미 ‘普遍性’ 즉 ‘先天性’이라는 概念과 義務性(必然性)이라는 概念이 內包되어 있다.

그래서 Kant는 ‘純粹實踐理性的 根本法則’의 資格要件으로서, 첫째로 普遍性 즉 모든 理性的 存在者에게 普遍的 妥當性을 가져야 하며, 둘째로 義務性 즉 義務로서 命命하는 예지적 강제력(=intellectueller Zwang) 가져야 한다.

따라서 純粹實踐法則은 일체의 經驗的 要素가 捨象된 先天的 原理가 아니면 안된다. 後天的 經驗的인 것은 普遍妥當性과 義務性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慾求의 對象을 획득하게 되면 快樂을 얻고 幸福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快樂나 幸福은 經驗的인 것이요 어떤 對象이 快樂을 줄 것인가 不快樂을 줄 것인가는 決코 先天的으로 인식될 수 없다. 그리하여 Kant에 依하면 慾求 能力의 質料(對象)를 意志의 規定根據로서 前提하는 實踐的 原理는 모두가 經驗的이고, 결코 實踐的 法則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質料的인 實踐的 原理는 純粹한 實踐法則이 아니라 自愛 또는 自己幸福의 原理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Kant는 ‘純粹實踐法則’으로부터 일체의 經驗的 要素 즉 質料的 規定을 배제하려고 하거니와, 그 경우에는 단지 形式上으로만 意志의 規定根據를 포함하고 있는 原理, 즉 普遍的 立法의 단순한 形式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Kant는 보편성과 義務性을 가지는 純粹實踐法則의 要件은 ‘先天的 立法의 形式’만이 그 制約的 原理라고 보았다.

‘先天的 立法의 形式’이란 純粹한 實踐法則의 制約原理이요, 純粹實踐法則으로서의 資格을 규정하는 ‘純粹實踐理性的 原則’(Grundgesetz d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이다.

위에서 言及한 사실을 Kant의 직접적 표현을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5) Ibid., p. 302

“A rational being cannot regard his maxims as practical universals laws, unless he conceives them as principles which determine the will, not by their matter, but by their form only.

By the matter of a practical principle I mean the object of the will. This object is either the determining ground of the will or it is not.

In the former case the rule of the will is subjected to an empirieal condition(viz., the relation of the determinig idea to the feeling of pleasure of the determinig idea to the feeling of pleasure and pain), consequently it can not be a practical law. Now, when we abstract from a law all matter, i. e., every object of the will (as a determining principle), nothing is left but the mere form of a universal legislation. Therefore, either a rational being cannot conceive his subjective practical principles, that is, his maxims, as being at the same time universal laws, or he must suppose that their mere form, by which they are fitted for universal legislation, is alone what makes them practical laws”<sup>16)</sup>

그렇다면 ‘先天的 立法의 形式’ 즉 ‘純粹實踐理性的 根本의 法則’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純粹實踐理性的 先天的 綜合命題’로서, Kant는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네 意志의 準則이 항상 동시에 普遍的 立法의 原理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Handle so, daß die maxime deiner Willens jederzeit zugleich als prinzip einer allgemeinen Gesetzgebung gelten könne.”

“Act so that the maxim of thy will can always at the some time hold good as a principle of universal legislation.”<sup>17)</sup>

Kant에 의하면 純粹實踐法則들은 위에 열거한 ‘純粹實踐理性的 先天的 綜合命題’에 부합될 때에만 純粹實踐法則으로서의 資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純粹實踐理性的 根本法則’은 ‘純粹實踐法則’들의 規定制約인 最高原理이다.

Kant는 ‘純粹實踐理性的 根本法則’은 普遍妥當성과 必然性(義務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主觀的 準則과도 구별되며, 어떠한 주어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적인 制約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假言命法(hypothetischer Imperativ)과도 구별되는 定言命法(Kategorischer Imperativ)이라야 한다고 했다.

定言命法은 ‘純粹實踐法則’ 그 自体를 目的으로 하여 이 目的을 실현할 것을 명령하는 단적인 命法이다.

16) Ibid., p. 301

17) Ibid., p. 302



定言命法은 無制約인 端的인 命令이기 때문에 絕對的 命令이요, 至上命令이다.

'왜'라는 물음이 필요없는 無條件的 命令이다. '經驗的 實踐의 法則'도 '命令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우리가 '經驗的 實踐의 命令'을 따르는 데는 자연적 경향성의 성취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즉 어떠한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定言命法은 經驗的인 理解關係나 어떠한 조건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제적인 至上命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定言命法을 따라야 할 理由는 어데있는가?

Kant는 定言命法은 우리에게 畏敬의 念을 주는 尊敬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려고 마음 두는 限, 道德律(純粹實踐法則)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畏敬의 대상으로 육박해 온다는 주장이다.

Kant가 '實踐理性的 根本法則'이라고 부르고 있는 '定言的 命法'은 意志의 內容의 原理가 아니고 意志의 形式의 原理이며, 內容을 捨棄하고 그 形式만을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純粹實踐理性的 根本法則'은 '純粹實踐法則들' 즉 '定言命法'이 갖추어야 할 制約의 原理로서, 그 '根本法則' 自体로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解答은 全無한 것이다.

그러므로 Kant가 다음에 밝혀야 할 과제는 '根本法則'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實踐의 法則이 무엇인가를 提示해 주는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實踐法則'들이 '根本法則'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실천적 판단력'이 直覺的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點이다.

왜냐하면 '實踐理性的 根本法則'은 超感性的 世界에 屬하는 叡智界의 自由法則이며, 특수적인 개별행위는 感性界에 屬하는 自然法則의 支配下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主觀的인 行爲의 準則은 自愛와 幸福의 原理라는 自然因果의 支配下에 있으며, '純粹實踐의 根本法則'은 '自由因果'의 法則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가지 異質的인 法則이 서로 부합하느냐의 여부는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Kant는 '自然의 法則'이 곧 '自由의 法則'(實踐理性的 根本法則)에 부합하는가, 않는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典型(Typus, pattern)이라는 概念을 통하여 判定할 수 있다고 보았다.

Kant는 실천적 판단력은 어떤 행위의 준칙이 根本法則에 합당한가의 여부는 自然法則을 매개로 해서 판정할 수 있으며, 이 自然法則을 곧 '道德法則의 典型'(Typus des Sittengesetzes)이라고 했다.

Kant의 典型(Typus, pattern)의 개념은 곧 '悟性概念'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특수한 개별적 행위가 '실천의 근본법칙'에 부합되었는지의 여부는 悟性概念인 因果性的 法則을 쫓아서 理性的 理論的 기능이 判定한다. 따라서 Kant에 의하면, 悟性만이 자연의

대상들에 대한 도덕법의 적용을 매개하며, 「理性理念」에 기초를 두고, 感性의 圖式이 아니라 단지 형식상으로 본 '自然의 法則'을 실천적 판단력을 위한 법칙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道德法の 典型의 概念은 悟性概念을 뜻한다.

以上の 論述은 아래와 같은 Kant의 聲明에 잘 나타나 있다.

“Consequently the moral law has no faculty but the understanding to aid its application to physical objects(not the imagination); and the understanding for the purposes of the judgment can provide for an idea of the reason, not a schema of the sensibility, but a law, though only as to its form as law; such a law, however, as can be exhibited in concreto in objects of the senses, and therefore a law of nature. We can therefore call this law the type of the moral law.”<sup>18)</sup>

그렇다면 自然法則을 典型을 삼을 때 '純粹實踐理性的 根本法則'과 부합되는 구체적인 實踐法則은 어떠한 것인가?

Kant는 典型을 매개로 한 實踐法則의 形式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너의 行爲의 準則이 너의 意志에 依하여 보편적 自然法則이 되어야 할 것처럼 행위하라.」

“Handle so, als ob die maxime deiner Handlung durch deinen Willen zum allgemeinen naturgesetze werden sollte.”<sup>19)</sup>

이것은 自己의 行爲의 準則이 自然法則과 같은 것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것에 좇아 행위할 경우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自己의 行爲의 準則을 判定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Kant의 例에 依하면

불행이 빈발해서 절망상태에 빠진 사람이 자살을 기도할 경우에 그가 自己의 行爲의 準則이 自然法則으로 되어 있는지를 自問해 본다고 하자. 이때에는 감정이 본래 生을 고무하고 촉진하는 것을 本分으로 삼는 것임에도 감정이 도리어 한갓 고통 때문에 생명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은 감정자체의 본분에 배치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생명을 파괴하는 자연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모순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上述한 準則은 보편적 自然法則으로서 성립할 수 없고, 그 결과로서 모든 의무의 최고원리에도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바를 Kant의 聲明을 직접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8) Kant : The Critique of pure reason, p. 320

19) Kant :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S. 70

“Einer, der durch eine Reihe von Übeln, die bis zur Hoffnungslosigkeit angewachsen ist, einen Überdruß am Leben empfindet, ist noch soweit im Besitze seiner Vernunft, daß er sich selbst fragen kann, ob es auch nicht etwa der Pflicht gegen sich selbst zuwider sei, sich das Leben zu nehmen. Nun versucht er : ob die maxime seiner Handlung wohl ein allgemeines Naturgesetz werden könne. Seine maxime aber ist : ich mache es mir aus Selbstliebe zum Prinzip, wenn das Leben bei seiner längern Frist mehr Übel droht, als es Annehmlichkeit verspricht, es mir abzukürzen.

Es fragt sich nur noch, ob dieses Prinzip der Selbstliebe ein allgemeines Naturgesetz werden könne. Da sieht man aber bald, daß eine Natur, deren Gesetz es wäre, durch dieselbe Empfindung, deren Bestimmung es ist, zur Beförderung des Lebens anzutreiben, das Leben selbst zu zerstören, ihr selbst widersprechen und also nicht als natur bestehen würde, mithin jene maxime unmöglich als allgemeines, Naturgesetz stattfinden könne und folglich dem obersten Prinzip aller Pflicht gänglich widerstreite.”<sup>20)</sup>

Kant는 위에 언급한 例 以外에도 ‘실천의 법칙’의 第一形式의 타당성을 그의 「道德形而上學의 原理」 제 2 장에서 세가지 例를 더 提示하고 있다.<sup>21)</sup>

Kant가 열거한 例의 요점은 主觀的 準則이 自然法則과 모순이 되지 않더라도 道德性을 인정할 수 없고 행위의 準則이 반드시 보편적 自然法則으로 되기를 意欲할 수 있어야만 道德的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普遍的 법칙이 된 것을 意欲한다는 바로 그 點이 Kant에게는 ‘道德的 判定 一般’의 規準이다. Kant는 各 個人의 準則이 내용적으로 서로 합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準則들이 내용적으로 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 形式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準則이든지 그것들을 普遍妥當性을 본질로 하는 「道德性의 形式」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표시했을 뿐이다.

2) 둘째로 Kant가 實踐法則을 表現하는 形式은 다음과 같다. .

「너 자신의 인격에서와 같이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는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사용하고 결코 단지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Handle so, daß du die Menschheit sowohl in deiner Person, als in der Person eines jeden andern jederzeit zugleich als Zweck, niemals bloß als mittel brauchest.”<sup>22)</sup>

위에 든 ‘實踐法則’의 樣式은 形式的 道德法을 내용적으로 규정해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20) Ibid., S. 71

21) a. a. O. S. 71~41 참조

22) a. a. O. 81

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目的 自体의 意味이다.

人間은 욕망, 소망, 期待를 갖는 存在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통의 目的과 關係가 있다. 이에 목적은 意志의 동기로 된다. 이런 목적은 實踐法則을 가지고 있는 限에 있어서 人間은 人格이다. 人間이외의 모든 사물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人格은 단지 手段으로서만 사용될 수 없다. 인격은 自己目的이요 絶對的 목적이다. 手段은 상대적 가치를 가지나 絶대적 목적은 絶대적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자기의 인격도 他人의 人格도 나의 욕망의 만족을 위한 手段으로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實踐法則의 둘째 양식의 의미하는 바이다.

人間은 욕망을 갖는 存在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통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목적은 意志를 동기로 한다. 이런 목적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Kant는 이러한 주관적 목적과 구별해서 의욕의 객관적 動因에서 가능한 객관적 목적을 세웠다. 이러한 객관적 목적은 모든 理性的 存在者에게 보편타당하며, 그것을 곧 目的 自体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目的 自体'를 위한 행위가 實踐法則에 부합되는 도덕적 행위라는 것이다.

Kant의 實踐法則의 第二樣式의 근거는 바로 人間性 및 理性的 性質 一般이 '目的 自体'라는 原理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것은 Kant의 다음과 같은 表現에 잘 나타나고 있다.

“Die Wesen, deren Dasein zwar nicht auf unserm Willen, sondern der Natur beruht, haben dennoch, wenn sie vernunftlose Wesen sind, nur einen relativen Wert, als Mittel, und heißen daher Sachen, dagegen vernünftige Wesen Personen genannt werden, weil ihre Natur sie schon als Zwecke an sich selbst, d. i. als etwas, das nicht bloß als Mittel gebraucht werden darf, auszeichnet, mithin sofern alle Willkür einschränkt(und ein Gegenstand der Achtung ist), Dies sind also nicht bloß subjektive Zwecke, deren Existenz als Werkung unserer Handlung für uns einem Wert hat; sondern objektive Zwecke, d. i. Dinge, deren Dasein ansich selbst Zweck ist, und zwar einen solchen, an dessen Statt kein anderer Zweck gesetzt werden kann, dem sie bloß als Mittel zu Diensten stehen sollten, weil ohne dieses überall gar nichts von absolutem Werte würde angetroffen werden; wenn aber aller Wert bedingt, mithin zufällig wäre, so könnte für die Vernunft überall kein oberstes praktisches Prinzip angetroffen werden.”<sup>23)</sup>

3) 세째로 Kant가 표시한 實踐法則의 樣式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理性的 存在者는 모두, 各 理性的 存在者 自己自身과 다른 모든 理性的 存在者를 결코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 자체로서 다루어야 한다.」

“Denn vernünftige Wesen stehen alle unter dem Gesetz, daß jedes derselben sich

23) a. a. O. 80~81

selbst und alle anderen niemals bloß als Mittel, sondern jeder zeit zugleich als Zweck an sich selbst behandeln solle.”<sup>24)</sup>

이 세계의 양식은 實踐法則의 普遍性과 主体性을 종합한 것을 표시한다. 모든 實踐法則은 객관적으로는 보편성의 형식 가운데 성립하되, 주관적으로는 「目的自体」로서의 인격성 가운데 존립한다. 그리고 그러한 형식과 이런 인격성을 결합하게 하는 조진이 各理性的 存在者의 意志가, 보편적으로 立法한다는 理念이다. 여기서 立法한다는 것은 自律의 이라는 뜻이다. 自律의 原理는 주체성을 표시하면서도 그저 주체성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보편성에 기반을 가진 주체성이다. 그러므로 개별적 인격은 어디까지나, 한 전체안의 成員으로서 행위하지 않을 수 없다. 목적의 왕국이라는 개념은 그저 이념적인 공동사회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념적 공동사회를 제시하면서도 그것의 실현은 사회성원인 개별적 인격의 自律的 行爲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리하여 自律의 原理는 社會的 主体性에 치중된 것이며 目的의 王國의 원리는 주체적 사회성에 역점을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人間은 自律의 일 수 있기 때문에 인격의 내면적 가치와 존엄을 느낄 수 있다. 인격의 내면적 가치와 존엄은 量的으로 측정될 수 없고 따라서 물건처럼 가격을 매겨서 남과 교환할 수가 없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은 시장가격을 가진다. 우리의 취미에 적응하는 대상은 감정적 값을 가진다. 그러나 시장 가격과 감정적 가격은 상대적 가치요 양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가치이다. 이에 대해서 인격의 내면적 가치는 절대적 가치이다.

目的의 王國에 들어 있는 인간들은, 그가 공동체의 법칙에 따르는 한에 있어서 공동체의 성원이지만 스스로 입법하는 者에 限해서는 각각 王이다. 成員인 면에서 보면, 남에게 봉사하는 수단적 존재이지만 王인 면에서 보면 目的 自体이다.

Kant는 目的의 王國에 있어서는 누구나 자기의 自由意志에 의하여 보편적 道德律에 따라야 하며,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의 人格이 至上目的으로서 대접받는 正義의 社會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Kant의 '目的의 王國'에 대한 言明의 일부분을 參考삼아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 Hiedurch aber entspringt eine systematische Verbindung vernünftiger Wesen durch gemeinschaftliche objektive Gesetz, d. i. ein Reich, welches, weil diese Gesetz eben die Beziehung dieser Wesen aufeinander als Zwecke und Mittel zur Absicht haben, ein Reich der Zwecke(freilich nur ein Ideal) heißen kann.

24) a. a. O. 87 인용문에서 與竹체로 된 부분은 위의 우리말 번역에서 삭제된 부분이란 표시로 論者가 그은 것이다.

Es gehört aber ein vernünftiges Wesen als Glied zum Reiche der Zwecke, wenn es darin zwar allgemein gesetzgebend, aber auch diesen Gesetzen selbst unterworfen ist. Es gehört dazu überhaupt, wenn es als gesetzgebend keinem Willen eines andern unterworfen ist.

Das vernünftige Wesen muß sich jederzeit als gesetzgebend in einem durch Freiheit des Willens möglichen Reiche der Zwecke betrachten, es mag nun sein als Glied, oder als überhaupt. Den Platz des letztern kann es aber nicht bloß durch die maxime seines Willens, sondern nur alsdann, wenn es ein völlig unabhängiges Wesen ohne Bedürfnis und Einschränkung seines dem Willen adäquaten Vermögens ist, behaupten.

Moralität besteht also in der Beziehung aller Handlung auf die Gesetzgebung, dadurch allein ein Reich der Zwecke möglich ist.<sup>25)</sup>

Kant는 實踐法則의 양식을 제시한 上述한 세 樣式은 그 根本에 있어서는 純粹理性的 根本法則과 동일한 '根本法則'의 세 공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第一의 樣式은 다른 두 가지 樣式을 자기속에 통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객관적이고 실천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이며 실천적이다. 즉 理性的 이념을 직관에 접근시키고, 그렇게 하므로써 감정에 접근시키기 위한 차별인 것이다.<sup>26)</sup>

그래서 Kant는 實踐法則의 세 가지 양식을 그의 저서 '實踐理性批判'에서는 實踐法則의 第一의 樣式속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 Ⅲ 批 判

Kant의 倫理說은 規範倫理學的 聖典이라고 해도 지나친 칭찬은 아닐 것이다. 그의 道德의 人格性 및 人間의 道德的 自律性的 強調는 Kant의 著述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숙성을 불러 일으키며, 또한 그의 理論的 思考의 組織性은 合理的 同意를 구하기에 충분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Jaspers도 말하기를 Kant의 倫理學이 그 理論的 展開에 있어서 論理的 組織性은 學問의 歷史上 Platon 以外에는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學者들이 Kant의 倫理學에 對한 批判을 시도한 바 있고 또한 시도해 왔지만, 그것은 Kant의 理論展開에 있어서 組織的 合理性的 側面이라기 보다는 實際的 側面이라 할 수

25) a. a. O. 87~88

26) a. a. O. 91 참조

있겠다. 다시 말하면, Kant의 道德論의 論理的 側面이 아니라 그의 道德論이 과연 現實的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實際的 側面을 말한다.

倫理學的 原理探究에 있어서 第一義의 原理定立의 토대는 道德的 信念에 기초할 수 밖에 없고, 認識論的 基礎의 定立은 原理的으로 不可能하다.

Kant의 倫理說은, 人間은 道德的 存在이므로, 人間은 마땅히 옳은 행위를 해야 하며, 그러므로 행위의 是非善惡을 判定할 수 있는 보편적인 絕對的 道德法則이 存在한다는 信念을 前提로 한다.

그러므로 人間은 本質的으로 道德的 存在이라는 Kant의 道德觀에 同意하는 사람에게는 Kant의 道德論은 論理的 側面에 있어서나, 實際的 側面에 있어서나 전적으로 共感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倫理說이라고 論者は 보고 싶다.

그리고 또한 人間의 本質은 理性이 아니라, '感性的 動物'이라는 自然主義的 人間觀을 信條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Kant의 道德論은 內容이 없는 빈껍데기의 形式主義에 불과하며 공허한 理論일 뿐 實際的일 수 없다는 批判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批判은 어디까지나 道德觀 즉 人生觀의 差異에서 비롯되는 '實踐的 批判'이요,<sup>27)</sup> 認識論的 論理性을 갖는 것은 아니다.

Kant의 道德論은 구체적인 內容이 捨象된 理論的 形式의 規定 분이므로, 自然的 傾向性을 갖는 人間의 구체적 행위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非實際的이라는 주장의 論據도 一面 妥當성이 있으나, 그러한 論據는 道德觀의 相異性이라는 근원적 理由가 저변에 깔려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판이 理性的 同意를 얻으려면, 人間의 本質은 感性이며 人間의 意志는 感性的인 經驗의 制約의 必然性에 의하여 완전히 支配되고 있다는 事實이 빈틈없이 認識論的 土대위에서 立證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認識論的 立證은 有限한 人間의 지성으로서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며, 不可知의 領域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道德論에 있어서 그 出發의 前提인 人間의 本質은 理性이나 혹은 感性이나 하는 規定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人生觀에 의하여 結定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差異는 '實踐的 意識'의 差異이지 '論理的 意識'의 차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Kant의 道德論의 批判者들은 그의 倫理說의 '論理性'이 아니라 '實際性'에 치중하고 있다. 즉 學問性이 아니라, 人間은 本質的으로 道德的 存在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옳은 행위를 해야 할 義務가 주어졌다는 道德觀에 비판의 眼鏡을 두고 있

27) 여기서 실천적 비판이란 論理的 批判이 아니라 倫理的 意識의 差異에서 비롯되는 批判이란 意味로 사용했다.

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Kant와 道德的 意識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道德論은 전적으로 同意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반면, 자연적 경향성에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理性的인 同意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實際的 同意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전적으로 理性的 同意나 實際的인 同意도 받지 못할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道德의 問題에 있어서는 어떠한 倫理說이 우월하나의 여부는 原理的으로 認識論的 判斷에 의해서는 不可能하며 '道德的 意識'의 同意에 依해서만 判定할 수 있을 뿐이다.

道德的 意識의 共感을 얻을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人間의 知性에 호소하여 論理的 同意를 얻을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理論的 組織性 즉 論理性이 重視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Kant는 그의 倫理學的 探究에 있어서 자연히 내용보다도 형식, 즉 合理性에 重点을 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Kant의 倫理說의 이론적 전개는 기하학적 논증과 같이 질서정연한 論理的 體系를 갖추고 있으며, 論者가 보기에는 Kant의 倫理說에 對한 많은 批判者들이 企圖 한 그 理論的 批判 自体가, Kant의 理論的 '合理性 自体' 보다, 非合理的이며, 또한 Kant의 道德論의 비판에서 出發한 一切의 倫理學的 體系도 Kant의 倫理學的 體系에 비교해 볼 때 결코 우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論者가 감히 Kant의 組織的인 論理性 보다도 우월한 비판을 할 수 있다든가, 또는 비견할만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다고 自認하기 때문에, 本批判의 論考에 있어서는 Kant의 倫理學的 體系의 核心的 骨幹에 置重하여 비록 論者는 理性的으로 同意를 하는 事項일지라도, 問題의 提起에 그 意味를 찾고자 한다.

## 1) 善意志 (Der Gute Wille)

Kant의 道德論의 前提는 '善意志'만이 無條件的인 本來的 善이라는 信條이다.

그러한 Kant의 주장의 根據는 理性에 따르는 것만이 '善'이라는 道德觀에 기초한 直覺論的인 實踐的 認識이라 할 수 있다.

理性과 感性의 兩者 가운데서 이미 理性만이 善하다는 주장은 善惡을 判別하는 第三의 價值原理가 實在한다는 가정적 前提가 可能하기 때문에, Kant는 먼저 理性과 感性 가운데서 理性이 善의 價值를 擔持하고 있다는 論證이 앞서야 했을 것이라는 問題性이 內包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道德的 價值的 原理를 定立함에 앞서서, 그것의 前提가 되는 價值一般論에 대한 原理的 設定이 없이 곧장 理性만이 善이라는 直覺論的 前提 위에서 출발했다는 點을 問題로



서 提起할 수 있겠다.

바로 그러한 問題는 道德的 價值的 原理를 探究코저 하는 Kant의 立場에서는 關心밖의 問題 이었다.

그러나 純粹한 形式論理的 發想에서 思考하면, Kant의 倫理說이 第一義的 難點은 善意志만이 本來的 善이라는 前提가 認識論的 價値를 결여한 直覺論的 概念이라는 點이다.

## 2) 實 踐 法 則

倫理學的 原理探究의 핵심과 과제는 행위의 是非善惡을 判定할 수 있는 普遍的인 實踐法則 즉 道德律을 발견함에 있다.

Kant가 '純粹한 實踐理性的 根本法則'을 發見함에 있어서 내세운 論理的 根據는 '純粹實踐의 根本法則'이 '純粹理性的 事實'이라는 토대이다.

그러므로 Kant의 論據가 合理的인 正當性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根本法則'이 과연 '純粹理性的 事實'이라는 것을 論理的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특히 有意해야 할 點은 Kant의 倫理學的 前提에 同意한 경우 즉 그의 道德觀에 共感할 경우에 있어서는 Kant의 倫理說의 理論的 展開가 거의 論理的 비약이 없이 完帙할 정도로 논리적 모순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點이다.

그런고로 비판의 素地는 단지 Kant와 道德觀을 달리하는 立場에 섰을 때 즉 그의 道德論의 前提에 同意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만 可能하다고 論者는 보고 싶다.

Kat가 「根本法則」이 '純粹理性的 事實'이라는 입증은 實踐理性的 立場에서 論證된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 事實을 토대로 해서 인식론적으로 입증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道德的 立場에 있을 때 道德法則의 存在는 부인할 수 없는 '純粹理性的 事實'로 나타난다는 點에 근거한다.

Kant가 第一批判에서 밝힌 바와 같이 道德法則의 實在는 經驗的 直觀에 주어지는 經驗的 事實이 아니기 때문에 人間의 能力으로써는 알 수 없는 不可知한 것이다. 그러므로 Kant는 道德法則의 實在을 實踐的인 立場에서, 즉 人間은 누구나가 道德的 存在이요, 道德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道德的 立場에 선다면 道德法則의 意識이 우리에게 엄숙성을 띄우고 육박해 온다는 것은 '純粹理性的 事實'로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純粹實踐法則'이 '理性的 事實'로서 同意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Kant와 같은 道德觀의 立場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와 직결된다. Kant와 같은 道德觀에 찬성하는 사람에게는 根本法則이 '純粹理性的 事實'임을 同意할 것이요, 道德觀의 立場을 달리하는 사람에게는 根本法則이 '純粹理性的 事實'임을 부인할 것이다.

Kant의 根本法則은 認識論的 인식의 아니라 實踐的 認識이다. 그런고로 '純粹實踐의 根本法

則'에 대한 Kant의 立論의 根本的 難點은 역시 認識論의 價値가 결여되었다는 問題性일 것이다.

### 3) 意志의 自由

'意志의 自由'의 문제는 많은 哲學者들에 의하여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던 哲學的 難問이다. 目的論과 機械論의 대립, 즉 非結定論과 結定論의 대립은 哲學의 역사위에 많은 爭點이 되었던 문제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結定論과 非結定論의 대립은 '必然'과 '自由'가 '同一性的 概念'이라는 論據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目的論은 意志의 自由性を 주장했고, 기계론 意志의 必然性を 주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의 相異性是 問題를 보는 觀點의 差異, 즉 發想의 기준의 차이에서 基因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제를 전체적 觀點에서 보느냐 또는 부분적 觀點에서 보느냐 하는 發想의 相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目的論的 立場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력해서 달성해야 할 目的이, 究極的 目的이든 '個別的 目的'(수단적 목적)이든 간에, 目的은 現在의 行동을 제약하는 時間的 逆行의 因果性を 갖고 있기 때문에 目的은 곧 合目的的 因果性を 意味하므로, 自由는 곧 必然의 概念과 일치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觀點에서 보면 自由라고 할 수 있고 객관적 觀點에서 보면 必然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계론적 立場도 주관적 觀點에 섰을 때는 必然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 觀點에서 보면 他의 干涉를 받지 않고 自己原因性에 의하여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自由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必然과 自由의 概念은 同一性的 概念으로 전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Kant도 自由의 概念을 理性의 自己의 法則에 따르는 必然性的 意味로 해석했고, 自由는 곧 理性이 理性의 法則에 따르는 自己因果性を 의미했다. 다시 말하면 自由는 意志(實踐 理性)가 理性의 法則을 따르는 것을 뜻한다.

그런고로 Kan에 의하면 意志가 自然的 傾向성을 따르는 것, 즉 感性을 따르는 것은 自由가 아니다. 그러므로 自由는 곧 理性의 自律이다. 즉 理性이 自己를 스스로 規制한다는 意味이다. 그리고 意志가 自然的 傾向을 따르는 것은 他律이다. 왜냐하면 意志(實踐 理性)가 意志(實踐 理性) 以外의 他의 感性의 制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理性이 自己가 아닌 他者의 支配를 받고 있기 때문에 他律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Kant의 自由의 概念은 意志가 理性을 따르는 것이요, 自由는 곧 自律이다.

以上の 證거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Kant는 自由의 認識을 어떠한 근거에서 可能하다고 보는가?

Kant는 自由의 認識根據를 實踐法則이 '純粹理性的 事實'이라는 토대위에서 要請에 의해서 이끌어 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實踐理性的 法則'이 存在가 확실한 事實이라면 그러한 法則을 따를 수 있는 意志의 自由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해야한다'는 當爲 즉 義務의 개념은 '할 수 있다'는 自由의 概念을 前提하고 있으며 또한 義務의 개념속에는 이미 自由의 概念을 內包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Kant의 立論은 Anselmus의 神에 대한 存在論的 證明(ontological proof)을 연상케 한다.

Kant가 시도한 그러한 立論의 妥當性的 如否는 實踐法則이 '純粹理性的 事實'로서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련된 原泉的인 問題性을 內包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上述한 비판의 要旨를 통해서 우리가 分明히 알 수 있는 사실은 Kant의 倫理學的 体系의 難點은 '純粹實踐 理性的 根本法則'이 '純粹理性的 事實'이란 그의 論證이 直覺論的 토대위에 定立된 인식론적 사실이 아니라 도덕적 사실이라는 原泉的 문제에서 연유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Bibliography

- Kant :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Reclam-Verlag Stuttgart, 1952  
 Kant :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Great Book, Vol. 42  
 W. D. Ross : Kant's Ethical theory, Oxford, 1954  
 F. H. Bradley : Ethical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27  
 D. M. Mackinnon : A Study in Ethical theory, Robert Maclehouse and Co. LTD, 1957  
 金泰吉 : 倫理學, 박영사, 서울, 1971,  
 崔載喜譯 : 實踐理批判, 박영사, 서울, 1968.  
 崔載喜 : Kant. 知文閣, 서울. 1964.

— Summary —

## A Study on Kant's Ethical Theory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heory of ethical intuitionism —

Rhee Hee-ju

Kant's ethical theory is to formulate the principle of moral value from the standpoint of his moral belief that a man as a rational being is essentially a moral being.

Kant took the ethical absolutism granted and his logical system of ethical theory was based on the intuitional hypothesis that there exists an apriori moral law which values a human conduct to be right or wrong.

Therefore the success or failure of Kant's argument in the formation of his ethical system should depend upon whether the apriori reality of absolute moral law could be demonstrated or not.

Kant proved the apriori practical law to be 'fact of pure reason' not on the foundation of empirical knowledge but on the foundation of intuitional knowledge.

Kant's system of ethics is logically formulated from the standpoint of apriori practical moral law.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in the sequence of Kant's logical consideration, to critically deal with 1) good will and duty 2) practical law and freedom 3) the concept of pattern and the other involving the logical contradictions in the presentation of his theories.